

제 2 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제 2-1 조 (계약기간)

1.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한 날까지 계약할 수 있다.
2.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급변경(등급 외 판정), 등급 포기, 사망인 경우에는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.
 -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 - ③ 등급변경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3. 준수사항
 -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 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.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범위, 급여이용 및 제공, 계약자 의무, 계약해지 요건, 계약의 해지, 이용료 납부,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을 포함한다)

제 2-2 조 (계약목적)

1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도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 - ① 수급자의 관리,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제 2-3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[별표1] 등급별 월한도액

(단위 : 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[별표2] 장기요양수가

(단위 : 원)

분 류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방 문 요 양	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
본인부담금(15%)	2,540	3,680	4,960	6,320	7,370	8,300	9,250	10,200

※ 감경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

구 분	장기요양급여비용
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100 감경하는자	본인 0%, 공단 100%
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60 감경하는자	본인 6%, 공단 94%
본인부담금에서 100분의 40 감경하는자	본인 9%, 공단 91%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% 본인이 부담한다.
2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수급권자는 9% 혹은 6%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.
3. 원거리 교통비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,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2-4 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)

1.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변경 요구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
-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
-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
-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
-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
-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③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
-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
-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
제 2-5 조 (계약의 해제)

1.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 요청 시
- ②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(사망) 서비스 종결
- ③ 수급자가 시설(요양원)입소 시
- ④ 이용료(본인부담금)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⑤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